

2026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모집 공고

2026. 8.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I 추진배경

- 대학의 연구역량과 산업체의 기술수요를 연계하여 산학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산학협력 성과 창출 필요
- 대학과 산업체 간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개선, 시제품 제작, 사업화 가능성 제고 등 산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확대 필요
- 혁신지원사업을 기반으로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운영을 지원하여 참여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대학 산학협력 역량 제고 필요

II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 사업기간: 2026년 9월 ~ 2027년 1월 (약 4개월)
- 사업비: 과제당 1,000만원 내외
- 지원 분야: 부천시 5대 특화산업 관련 분야 및 부천대 특화전략 사업 분야 등

<지원분야 참고 사항>

- 부천시 5대 특화산업 : 금형, 조명, 로봇, 패키징, 세라믹
- 부천대 특화전략 사업분야 : 그 외 제조업, 소부장, ICT산업, 건축, 토목, 섬유, 콘텐츠, 보건복지, 영상&게임콘텐츠, 뷰티, 유아교육, 디자인, 식품, 관광, 서비스업 등
- 지원 분야는 예시이며, 기타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가능 전 분야 가능

※ 우리 대학 학과별 특화 분야와 부천시 5대 특화산업 및 전략산업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와 관련된 기술 개선, 시제품 제작, 공정개선, 제품 고도화 및 현장 애로 기술 해결 수요를 보유한 기업을 우선 선정함

□ 신청자격

○ 참여기업(필수): 부천대학교 가족회사 및 가족회사로 등록할 의향이 있는 기업

※ 제외대상 : 부천산업진흥원, 부천상공회의소, 지자체, 각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신청 제한: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신청가능

요 건	세부 내용
① 휴 · 폐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② 세금체납	○ 국세 ·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법인, 대표자 모두)
③ 채무불이행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④ 금융규제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경우
⑤ 참여제한	○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중단, 협약해지, 사업참여 제한 등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경우
⑥ 임금체불	○ 고용 노동부 명단 공개기준(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 만원 이상인 기업

○ 연구책임자 : 부천대학교 소속 전임교원(산학협력 중점교원 포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제2항 4호에 의거 산학공동기술 개발과제는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음. 기술개발과제인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연구자를 참여연구원으로 포함하여 제출

□ 매칭절차

○ 참여기업이 제출한 ‘2026년 산학공동기술개발 과제신청서’ 심사를 통해 선정된 과제를 부천대학교 소속 교수와 매칭

IV

연구비 지원 내용

○ 신제품 제작을 위한 지원사업

- 실제 생산 가능성 및 제품의 시장성 확보 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 (지원 내용)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비, 샘플 제작비, 외주 가공비 등

○ 사업비 편성 기준

- 연구비는 기술개발과제당 10,000천원 이내로 편성
- 연구비 편성 및 집행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하되, 본교 연구비 관리지침과 대학혁신지업사업 지침^[붙임]을 참고
- AI 구독(사용), 공동활용장비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계상 불가

V

평가기준

○ 평가방법 : 관련 분야 전문가 구성하여 평가

○ 평가 가점 사항

- 이술이전 계약 체결(2026년 2월말까지) : 국고지원금 대비 20%이상
- 과제성과물 특허 출원(2027년 2월말까지)

○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정성적 평가 (30점)	CEO참여의지	10점	
	추진목표 및 과제계획의 충실성	10점	
	지원금 사용계획의 적정성	10점	
정량적 평가 (30점)	기업 지속성	10점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10점	
기술개발 과제의 파급효과 (40점)	매출액(25년 기준)	10점	
	지식재산권 출원 계획	20점	
	개발물의 제품화 계획	20점	
합 계		100점	

VI 추진일정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제출 : 2026.09.01.(화) ~ 09.11(금) 18시까지
↓	
심사평가 및 수혜업체선정	- 선정평가 심의위원회 개최 및 과제 심사 : 2026.09.16.(수) - 과제선정 및 연구비 책정 : 2026.09.18.(금)
↓	
연구책임교수 선별 및 매칭	- 과제 연구책임교수 선별 및 매칭 : 2026.09.16.(수) ~ 09.18(금)
↓	
연구협약체결 (기업-산단)	- 연구협약체결일 : 2026.09.21.(월) ~ 09.23(수)
↓	
과제수행	- 연구과제 수행기간 : 2026.09.28 ~ 2027.01.28 (4개월)
↓	
최종결과보고	- 결과보고서 제출 : 2027.01.29(금) 18시까지 - 특허 출원 신청 또는 기술이전 계약 체결 : ~2027.02.26(금)까지

※ 추진 일정은 단계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VII 신청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6년 9월 11일 18시까지 도착분 유효
- 접수 방법: 이메일로 제출 서류를 각각 PDF 형식으로 변환 후 제출
 - 접수 이메일: slobbie@bc.ac.kr
 - 접수 확인: 032-610-0583
-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비고
1	과제신청서	
2	계획 요약서	

3	과제 추진계획서	
4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5	참여의사 확인서	
6	중복성 검토 확인서	선정 시 제출
7	기술이전 협약서	선정 후 해당 시 제출
8	사업자등록증 사본	
9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sminfo.mss.go.kr)에서 발급
10	주업종 확인서 및 주업종명 조회 화면 인쇄본	
11	참여기업 가입 신청서	선정 시 제출

VIII 최종결과물

○ 결과보고서 및 연구성과물 증빙서류

- 결과보고서 및 성과물(기술이전 계약서 또는 특허출원 증명서) 증빙 서류

- * 논문[에스시아이 Expanded(SCIE), 비SCIE, 평균Impact Factor(IF)],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 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생명자원(생명정보, 생물자원), 표준화 (국내, 국제), 화합물, 신품종 등을 말하며, 논문, 학술발표
- * 기술실시(이전), 기술료, 사업화(투자실적, 제품화, 매출액, 수출액, 고용창출, 고용효과, 투자 유치), 비용 절감, 기술(제품)인증, 시험제품 제작 및 인증, 신기술지정, 무역수지개선,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지원(기술지도), 교육지도, 인력양성(전문 연구인력, 산업연구인력, 졸업 자수, 취업, 연수프로그램 등), 법령 반영, 정책활용, 설계 기준 반영,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기술무역, 홍보(전시), 국제화 협력, 포상 및 수상, 기타 연구개발 활용 증빙 필요

IX 문의처

○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심나빈 담당 (032-610-0583, slobbie@bc.ac.kr)

비목		사용 용도	산출기준	구비서류															
연구재료비		- 실험, 시제품 제작 등에 직접 사용되어 결과물에 포함되거나 소모 되는 것 - 물품 예시 : 염료, 시약, 소자 등 - 300만원 미만 개별(자체) 구매 가능 ※100만원 이상 시 비교견적서 구비 - 300만원 이상 시 본교를 통해 조달(구매)	견적 가격	-(100만원 미만) 구매의뢰서(양식), 견적서, 카드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검수조서(양식)(또는 거래명세서에 '검수자 : 성명' 날인) ,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100만원 이상)구매의뢰서(양식), 견적서, 비교견적서, 카드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검수조서(양식),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연구 활동 비	지식재산권 창출활동비	- 창출관련 사전 조사 분석 비용 - 출원 부대 서류 작성비 계상 불가(별도 지원)	견적 가격	카드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조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															
	전문가 활용비	- 참여 기업체의 참여자 및 소속된 자 지급 불가 - 연구비의 40% 이내에서 사용 - 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용도 - 본교 전문가 활용을 위한 수임료 단가 준용	<table><thead><tr><th>구분</th><th>지 급 대 상</th><th>자문비</th></tr></thead><tbody><tr><td>A급</td><td> ▪ 외부 전문가 중 해당 분야의 국내·외 저명인사 </td><td>500,000원 이하1회당</td></tr><tr><td>B급</td><td> ▪ 부교수 이상, 책임교 연구원 ▪ 산업체경력 10년 이상 </td><td>400,000원 이하1회당</td></tr><tr><td>C급</td><td> ▪ 조교수, 선임교 연구원 ▪ 산업체경력 5년 이상 </td><td>300,000원 이하1회당</td></tr><tr><td>D급</td><td> ▪ 조교수, 연구원 ▪ 산업체 5년 이하 </td><td>100,000원 이하1회당</td></tr></tbody></table> ※ 자문비는 교육과정, 기술개발 등의 심의/자문에 한해 4회까지만 가능함 ※ 기술지도, 자문 내역 및 일시, 시간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함	구분	지 급 대 상	자문비	A급	▪ 외부 전문가 중 해당 분야의 국내·외 저명인사	500,000원 이하1회당	B급	▪ 부교수 이상, 책임교 연구원 ▪ 산업체경력 10년 이상	400,000원 이하1회당	C급	▪ 조교수, 선임교 연구원 ▪ 산업체경력 5년 이상	300,000원 이하1회당	D급	▪ 조교수, 연구원 ▪ 산업체 5년 이하	100,000원 이하1회당	전문가 이력서,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전문가활용 결과보고서(양식), 개인정보동의서(양식)
	구분	지 급 대 상	자문비																
	A급	▪ 외부 전문가 중 해당 분야의 국내·외 저명인사	500,000원 이하1회당																
	B급	▪ 부교수 이상, 책임교 연구원 ▪ 산업체경력 10년 이상	400,000원 이하1회당																
	C급	▪ 조교수, 선임교 연구원 ▪ 산업체경력 5년 이상	300,000원 이하1회당																
	D급	▪ 조교수, 연구원 ▪ 산업체 5년 이하	100,000원 이하1회당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 시험, 분석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비용 - 개인(박사 등)에게 의뢰 불가	견적 가격	카드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뢰서 또는 계약서, 결과보고서																
임차료	- 참여 기업체, 본교 등의 공간에 대한 사용료 (내부거래) 불가	견적 가격	카드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회의비	- 연구참여자(본교 및 기업체) 간 사용 가능 - 회의록 작성 및 회의 참석자 서명 날인	- 외부인 참석 시 : 1인 3만원, 1일 1회 - 외부인 미참석 시: 1인 2만원, 1일 1회	카드전표, 회의록(양식)																
문헌구입비	- 연구와 연관성이 분명한 도서에 한함	견적 가격	카드전표, 거래명세서																
논문게재료	- 과제 관련 논문게재에 한함	견적 가격	카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서, 게재논문(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E 여부, 게재 년월일, 저자명, 시작~끝 페이지가 표시되어있는 서류)																